

2021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4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-11 번지(A17블럭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 3. 19. ~ 3. 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화이트코리아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96-1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03,853.64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5,864.354 m²	건폐율	15.17 %	층수 지하 : 2층 / 지상 : 44층
	주 용 도	공동주택 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주9동, 부12동
	최고높이	129.90 m	용적률	182.99 %	연면적 합계 291,891.7152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건축계획)분야	○ 제시된 주차장 상부의 탑라이트 예시는 기존 조경계획과 어울리도록 위치 및 안전을 고려하여 향후 반영할 것. ○ 제시된 동별 재활용품 수거공간은 향후 비, 바람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각 공간별 수전 설치할 것.			
	(소 방)분야	○ 108동 동측 주발코니(거실) 방향 소방차량 통행 및 부서공간 확보 바람(부서공간: 원활한 활동을 위한 폭8m, 길이 15m 이상 확보) ○ 101동, 102동 남측 주발코니(거실) 방향 소방차량 부서공간으로의 통행시 연결통로(교각)의 높이는 지상에서 하단부까지 4.5m 이상 되도록 반영하거나 삭제 바람(관련 단면도 제시할 것)			
	(공 통)분야	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할 것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